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의 국기게양 방식을 연중 게양으로 변경〉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37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07. 03.
3. 회 부 일 : 2025. 07. 0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 국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하고 있고,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은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시각에 국기를 게양·강하하고 이때 게양식·강하식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급 학교는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기 게양식·강하식을 행하지 않고 있음. 이는 국기 게양·강하 시간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일치하지 않으며, 해당 절차를 담당할 인력이 부재한 현장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기 게양의 교육적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기에 대한 존중과 애국심을 함양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하도록 한 현행 방식에서 ‘연중’ 게양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 ② (생략)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u>청사</u>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③ ----- ---- <u>청사, 각급 학교</u>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u>각급 학교</u> 및 <u>군부대</u> 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④ <u>군부대</u> ----- -----.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법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매일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고,¹⁾ 정해진 시각에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과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청사와 각급 학교, 군부대 모두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고,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을 실시하였으나, 1996년 대통령령(「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개정으로³⁾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청사는 국기를 24시간 연중 게양할 수 있게 된 반면, 학교와 군부대는 기존 제도(낮에만 국기 게양, 게양식·강하식 실시)를 유지하게 되었음.

1)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

④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2)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①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각에 국기를 게양·강하한다.

1. 게양 시각 : 오전 7시
2. 강하 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의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오후 5시

제19조(게양식 및 강하식) ① 법 제8조제4항의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학교 및 군부대는 그 주된 국기게양대의 국기를 게양·강하하는 때에는 게양식 및 강하식을 행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의 사유로 국기를 게양·강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정이유:** 국민이 일상생활속에서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기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를 활용한 문양을 각종 물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기를 가까이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와 같은 예외는 학교가 국기에 대한 존중, 국가관 및 애국심을 함양하는 교육적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을 통해 국가상징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⁴⁾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이 등·하교 시간과 겹치지 않아 교육 효과가 제한되고, 담당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을 엄격히 이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국기를 24시간 연중 게양하고 있는 실정임.⁵⁾

이에, 개정안은 학교에서도 24시간 연중 국기 게양을 허용하여 국기 게양·하강 규정 준수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4조(국기 게양일 및 게양·강하 시각) ①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국기게양식 및 국기강하식이 필요한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국기게양대에는 매일 낮에만 게양하며,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국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5) 「학교 국기 게양·강하식 폐지 추진」, 매일경제, 2001.1.7. <https://www.mk.co.kr/news/all/2436406>
「법으로 정한 '태극기 예우' 외면 당한다」, 세계일보, 2013.8.14. <https://www.segye.com/print/20130814004557>
「전국 학교서 매일 불법을?...태극기 24시간 게양 합법화 추진」, 세계일보, 2025.7.3,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703511776>

첫째,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함으로써 국가관, 애국심,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절차가 폐지될 경우, 학생들이 국가상징에 대한 존중과 경의를 직접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가 축소되어, 장기적으로 국가관 형성이나 공동체 소속감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기 게양·강하 시각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⁶⁾ 현행 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통하여 학교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결론적으로, 개정안은 학교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국기 게양식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와 기존 법령의 유연한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행정안전부는 각급 학교의 국기 게양식 운영이 국가관 확립과 애국심 함양을 위한 교육적 목적임을 강조하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가 국가관 교육을 포기했다는 사회적 비난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문 의 처

02)6788-5338